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0
----------	-----

2011년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6월 10일, 조규영의원 외 24명
-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6월 15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6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영)

- 최근 우리 사회에 한부모 혹은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소외계층 아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이들은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시간이 거의 없고, 식사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래문화도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 그리하여 저소득 가정이나 한 부모, 조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욕구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한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운영 중에 있음.
- 그렇지만 이런 센터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아직 부족함. 센터의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무자들의 낮은 급여체제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임.
 -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학습과 교육, 급식, 문화 활동을 서비스하기에는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그래서 저소득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아동보호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센터의 이용대상으로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센터에서는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총괄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함

□ 세부내용

(1) 시장의 책임 관련 사항(안 제2조)

- 안 제2조는 시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 한 것임.

(2) 사업실행 주체 관련 사항(안 제4조)

-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사업실행 주체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등을 열거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로 포괄하고 있음.
- 여기에서 실행주체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신고기준¹⁾에 부합하면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도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임.

〈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 주체 현황
(2011년 3월 기준)

합계	시민 단체	재단 법인	사단 법인	사회복지 법인	종교 단체	개인	기타
377	8	18	20	36	103	178	14

(3) 이용 대상 관련 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여,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이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을 비롯하여,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등을 포괄하고 있음. 또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교장, 지역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추천에 의할 수 있을 것임.

(4)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설비 기준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또한, 종사자 배치 기준 :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 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안 제6조는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센터의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의 연령층이 0세부터 18세미만 까지 연령대상의 폭이 매우 넓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며, 저연령층 아이들이 중·고생들이 하는 비어나 나쁜 행동을 쉽게 접하는 등 보호와 교육에 있어서 그 주요기능을 수행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및 기능

사업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능	특징 (대상 연령대)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급식제공 영양결핍지원	보호	18세 미만의 센터 이용아동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가정방문, 가족부모상담, 가족기능강화	정서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학습지도, 미술교육, 경제교육	교육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생활교육, 학습부적응지원, 숙제지도, 인성교육, 안전교육, 위생지도	보호, 교육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캠프, 공동체프로그램, 문화체험, 놀이, 특별활동, 체육	문화, 정서 활동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지역사회연계, 결연후원 후원자관리, 자원봉사자 영관리,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7.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아동상담, 심리·정서·지 지·상처 치유, 아동의사결 정 및 참여를 통한 활동	정서	

(5)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에 대해 '04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05년부터 지원하여 오고 있음.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증에 따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²⁾하며 그 평가결과를 운영비지원과 연계하고 있음. 참고로 평가는 2009년 최초로 실시하여 2010년까지 2회 실시하였음.
- 현재 센터별 이용아동 수 및 상근종사자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비용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포함하고 있음.
참고로 2011년도에 서울시에는 있는 센터 총 381개소 중에서 323개소가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음 (2011. 6. 8 현재).

〈표〉 최근 3년간 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액	비율(%)
총 계	17,746,845	20,654,597	27,158,044	100
센터사업비	9,055,197	11,499,766	14,257,403	5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센터 처우개선비	없 음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8,691,648	9,154,831	12,900,641	48

2)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서울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연령을 일률적으로 만 18세미만으로 정하여 하나의 센터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앞으로 초등과 중·고등을 분리하여 센터를 연령대별로 특성화 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참고〉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2011. 6. 8 현재)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총개소	운영비 미지원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예산 (2011년 지원예산)		
					합계	국비	시비
	합계	381	58	323	7,056,996	2,117,099	4,939,897
1	종로구	11	-	11	240,600	72,180	168,420
2	중구	5	-	5	112,200	33,660	78,540
3	용산구	6	1	5	105,000	31,500	73,500
4	성동구	11	-	11	247,800	74,340	173,460
5	광진구	19	1	18	397,200	119,160	278,040
6	동대문구	6	1	5	109,800	32,940	76,860
7	종량구	25	2	23	525,200	157,560	367,640
8	성북구	26	3	23	513,100	153,930	359,170
9	강북구	19	2	17	351,600	105,480	246,120
10	도봉구	17	7	10	205,800	61,740	144,060
11	노원구	13	2	11	245,400	73,620	171,780
12	은평구	20	7	13	322,800	96,840	225,960
13	서대문구	6	-	6	135,600	40,680	94,920
14	마포구	11	-	11	252,600	75,780	176,820
15	양천구	24	4	20	425,391	127,617	297,774
16	강서구	16	3	13	273,000	81,900	191,100
17	구로구	20	4	16	321,300	96,390	224,910
18	금천구	24	4	20	432,900	129,870	303,030
19	영등포구	14	2	12	247,300	74,190	173,110
20	동작구	17	2	15	324,600	97,380	227,220
21	관악구	36	7	29	634,205	190,262	443,943
22	서초구	4	1	3	63,000	18,900	44,100
23	강남구	3	-	3	58,800	17,640	41,160
24	송파구	10	2	8	172,800	51,840	120,960
25	강동구	18	3	15	339,000	101,700	237,3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 등에 대해 '05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요망.
- 답변 : 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해 서울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센터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규 : 「아동복지법」 제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 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3.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